2026. 10.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용)

농림축산식품부

통신판매중개업자용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이행 가이드라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

※ 일러두기(2026. 10. 22. 기준): 이 가이드라인은 법 제6조제6항의 고지사항을 정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심사 완료)과 고지방법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개정령은 2026. 10. 22.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Ⅰ. 추진배경 및 법적근거

1. 추진배경

그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대규모점포 개설자(법 제6조제4항)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법 제6조제5항)에 대하여 입점업체·판매중개 의뢰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방치'하지 않을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 온라인 유통의 핵심 축인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예방적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사이버몰 내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26. 4. 21. 법 개정(법률 제21563호)을 통해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법 제6조제6항·제7항 신설). 이어 시행령에서 고지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고지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신설 의무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법적근거

구분	내용
의무근거	법 제6조제6항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의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의무, 2026. 4. 21. 신설)

구분	내용
위임근거	법 제6조제7항 (고지의 방법 등 세부사항 위임, 2026. 4. 21. 신설)
고지사항	시행령 제5조의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사항, 신설)
고지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신설)
제재근거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3 (고지의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6. 4. 21. 신설)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시행일	2026. 10. 22.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동시 시행)

Ⅱ. 원칙과 예외

1. 원칙 — 고지의무의 성립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몰에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때마다 그 의뢰인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시행규칙 제4조의2제1호),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앱 등 입점 방식을 불문하고 통신판매중개에 해당되면 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2. 예외 및 유의사항

- 고지의무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며, 자사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직매입 방식)는 법 제6조제6항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일 사업자가 중개와 직접판매를 겸영하는 경우 중개 부분에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고지의무는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확인의무가 아니라, 의뢰인이 원산지 표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정보제공의무입니다. 표시 적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여전히 원산지 표시의무자(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법 제6조제4항(대규모점포)·제5항(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치 금지의무'와 달리, 제6항은 '고지의무' 그 자체이므로 고지를 이행한 이상 의뢰인의 후속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도 방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Ⅲ. 고지사항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시행령 제5조의2 신설).

1.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범위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짓 표시 등의 금지사항 및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고지는 위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에 따른 고시가 제정·개정되면 해당 사항도 고지 내용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고시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Ⅳ. 고지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시행령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의2 신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 세 가지 방법은 선택적(어느 하나)이며 중복 이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 분쟁에 대비하려면 게시·발송 이력을 전자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제1호 상시 게시 + 제3호 개별 안내 병행 등)을 권장합니다.

Ⅴ. 고지방법별 허용·불허용 예시

Ⅳ장의 3가지 방법은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선택적 구조입니다. 다만 어느 방법을 택하든 ① 상시성(계속 확인 가능할 것)과 ② 인지가능성(다른 내용에 묻히지 않고 실제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을 실질적으로 충족해야 고지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안내하는 것이며, 구체적 사안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제1호 — 사이버몰 초기 화면·공지사항 게시판 상시 게시

요건: ① 판매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 내 정보처리시스템(판매자센터 등)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일 것, ② 상시 게시될 것, ③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할 것

허용 예시	불허용 예시
판매자센터 첫 화면에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배너를 상시 배치하고, 클릭 시 상세 내용으로 연결	공지사항 게시글이 새 글에 밀려 며칠 만에 목록 밖으로 사라지는 경우 (상시성 결여)
판매자센터 공지사항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 안내' 게시글을 상단 고정으로 등록하고, 입점 승인 시 해당 게시글 확인을 안내	판매자 페이지의 3~4단계 클릭 후에야 도달하는 하위 메뉴에만 게시 (초기 화면·공지사항 게시판 요건 미충족)
판매자센터 초기 화면에 '원산지 표시 안내 보기' 링크를 상시 노출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두기만 하고 판매자에게 확인을 안내하지 않는 경우 (확인 안내 요건 미충족)

2. 제2호 —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 제공

요건: 판매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 화면으로 제시할 것 (다른 내용과 뒤섞인 형태는 지양)

허용 예시	불허용 예시
입점 신청 절차 중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전용 화면(모달 팝업 또는 별도 페이지)을 띄우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함	수십 개 조항의 이용약관 전문 중간에 원산지 표시제도 내용을 한 조항으로만 끼워 넣고 전체 동의만 받는 경우 (별도 인지 계기 없음)

허용 예시	불허용 예시
판매중개 의뢰(입점) 완료 화면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체크박스와 함께 요약 내용을 별도로 표시	고객센터 FAQ 게시판에만 있고 신청 절차상 노출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스스로 찾아가야 함)

3. 제3호 —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개별 안내

요건: 의뢰인 개개인에게 직접 도달하는 방식일 것

허용 예시	불허용 예시
입점 승인 시 등록된 전자우편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 메일을 개별 발송	다수에게 동시 발송되는 마케팅성 뉴스레터에 다른 공지와 섞어 한 줄로만 언급 (개별 도달은 되나 실질 인지가능성이 낮음)
계약(입점) 서류에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문을 별지로 첨부하여 서면 교부	계약서 전체 스캔 PDF 파일명에만 '원산지안내포함'이라 적어두고 본문에는 실제 내용 누락

※ 형식만 갖추고 실질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지의무 이행으로 인정받지 못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후 과태료 분쟁에 대비해 게시·발송 이력을 전자적으로 보관해 두도록 권장합니다.

Ⅵ. 고지문(표준안)

<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문 표준안 >

① (원산지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 판매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고시)에서 정하는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표시 대상: 국산·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중 법령에서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정한 품목(가공품은 법령에서 정한 원료의 원산지)

○ 표시 방법: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구매 시점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 및 상세페이지의 원산지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원산지표시법 제18조).

②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판매자는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등 제6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

③ (위반 시 제재) 판매자가 ②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원산지표시법 제14조)

○ 행정처분: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거래행위 금지 및 위반사실 공표(원산지표시법 제9조)

○ 과징금: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원산지표시법 제6조의2)

※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hp/contents/contentsTab.do?menuId=MN30559)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www.nfqs.go.kr) 누리집의 원산지 표시제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Ⅶ. 위반 시 제재

1.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및 근거	1차	2차	3차	4차 이상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6조제6항 위반,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3)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 신설(법정 상한 1천만원). 부과·징수권자는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관세청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2. 참고 — 판매자 위반사실 공표 시 중개업자 정보 포함

판매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아 위반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그 판매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의 홈페이지 주소가 공표 사항에 포함됩니다(시행령 제7조제3항제7호).

Ⅷ.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원산지 표시제도 담당) 044-201-2276, 2277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정책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051-773-5414